산업기술 분쟁조정이라?

제도소개

산업기술 유출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·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·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'산업기술 분쟁조정' 시행



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3조(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)

①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(이하"조정 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한 산업기술의 범위



법적근거

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(정의)

- 가.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
- 나.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
- 다.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
- 라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6조의2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(제6조의2 삭제 [2016.1.6])
- 마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
- 바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
- 사.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
- 아.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
- tip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3(산업기술의 해당여부 확인)에 따라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🌘 조정의 효력

조정이 성립된 경우,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인 '재판상 화해'의 효력 발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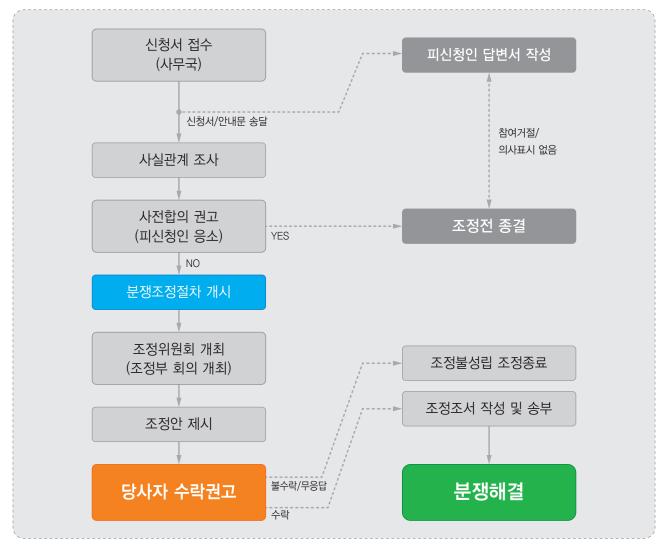
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8조(조정의 효력)

④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해당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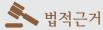
⊚ 조정의 장점

- ◆ 신속성 조정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건해결
- **瞥 전문성** □ 법률적·기술적 전문가 및 기술보호 담당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
- 🙀 비밀성 | 조정전체 과정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
- 🔯 경제성 | 조정신청 수수료 1만원으로 분쟁조정 가능
- NB성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화해, 양보 등을 통한 분쟁해결

조정절차



tip 분쟁조정 시 피신청인이 참석에 불응하거나 조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, 성실하게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. [시행일: 2017.9.15.]



제26조(분쟁의 조정) 제4항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
◉ 조정신청 방법

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의 조정신청서를 '국가법령정보센터'나, '한국산업 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'에서 다운받아 신청취지. 신청원인 등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제출

▶ 접수처

• 전

문: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길 34

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

(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) 화: 02-3489-7033

• 이 메일: is-med@kaits.or.kr

• 홈페이지: www.kaits.or.kr



[단구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3조(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) 제7항에 따라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원활한 조정업무 및 상담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.